

제314회 시의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산업진흥원

정 관 변 경 보 고

2022. 9. 22.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□ 개 요

-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

제55조의3(조례상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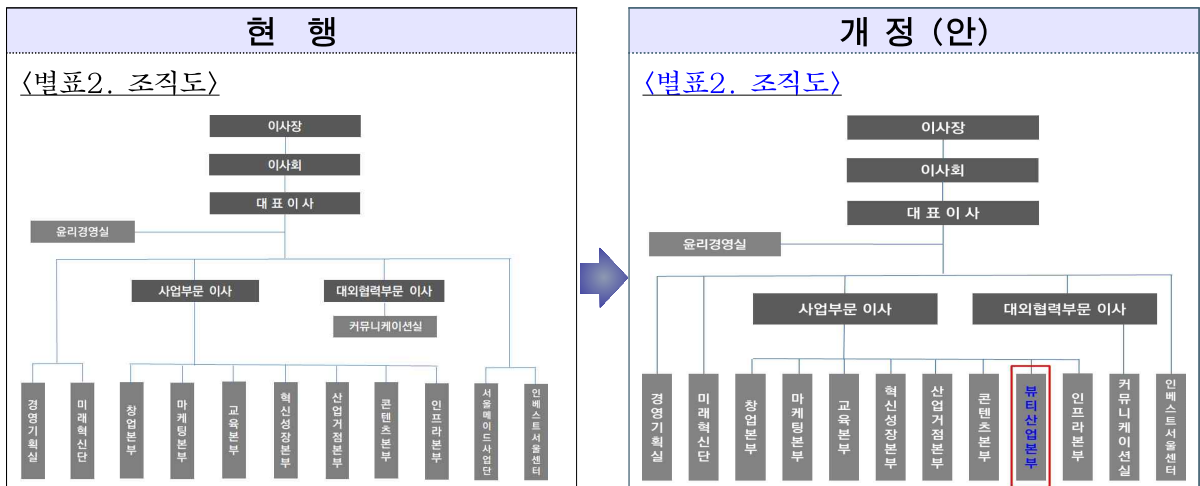
□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○ 변경 사유

- 서울시의 서울형 뷰티·패션산업의 전략적 육성 기초 등 선제적 반영을 위한 기존 서울메이드 사업단의 기능 및 추진목표 변경에 따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직제 및 정원규정 상 조직도 반영

○ 변경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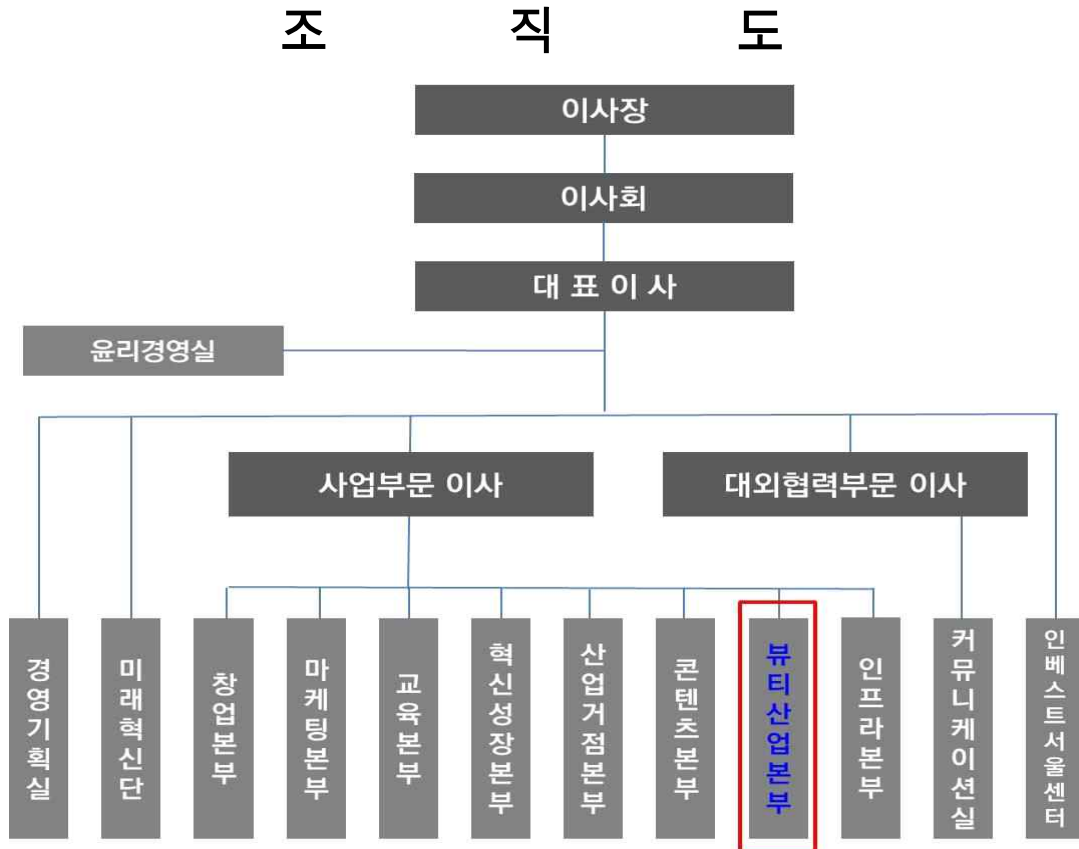
- 조직도(별표2) 현행화

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(안)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〈별표 2. 조직도〉

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